

종합시험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성격) 종합시험은 신학 및 철학에 대한 학문적 능력과 기초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신앙을 설명하는 능력으로 종합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.

제3조(대상 및 자격) ① 종합시험 응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사제직을 지망하는 학생
2.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

② 사제직을 지망하는 학생은 부제서품 전(6학년 1학기)에 응시하여야 한다.

③ 일반학생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이어야 한다.

제4조(시험일) 1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하루를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출제) 「가톨릭 교회 교리서」를 텍스트로 하며, 전공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로 출제한다.

제6조(합격기준)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7조(학점 및 성적부여) ① 종합시험에 4학점을 부여한다.

② 종합시험 점수에 등급과 평점을 부여하고, 해당학기 총평점 산정에 반영한다.

제8조(재시험) ① 불합격자에게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
② 당해연도 재시험은 성적결과 발표 후 4주 이내(1차)와 2학기 중간고사 기간(2차) 중에 실시한다.

제9조(시험관리) 종합시험의 출제, 채점, 재시험 부과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
제10조(결과보고) 대학원 교학부장은 종합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 총장이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종합시험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